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 의제 근거 조항 신설 등 〉
■ 정부(의안번호 제221996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수정(안 제2조· 안 제33조·안 제38조·제4장 제명·제41조의2)	3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 개선(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3) ..	7
3. 시·도지정유산 중 자연유산자료 추가(안 제4조의3 및 제33조의2) ..	8
4. 승인의 의제 및 신고의무 제외(안 제33조의4 삭제)	11
5. 수수료 부과(안 제51조)	18
6.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56조)	20

I. 제안경위

- 가. 제 출 : 정 부
- 나. 발 의 일 : 2026. 7. 15.
- 다.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수정(안 제2조 ·안 제33조·안 제38조·제4장 제명·제41조의2)

개정안은 현행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안 제33조·안 제38조·제4장 제명·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 17. (생략)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u> ----- -----. 13. ~ 17. (현행과 같음)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u> ----- ----- ----- ----- -----

현행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생략)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4장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하는 경우는 <u>제외한다</u>)----- -----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u>-----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장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등</u>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1조의2(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u>국가유산수리기술</u> ----- ----- ----- ----- <u>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u> ----- -----.
1. <u>전통건축</u> 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1. <u>국가유산</u>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의 <u>전통건축</u> 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6. ---- <u>국가유산</u>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통문화기술진흥재단은 2016.2.3. 시행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서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 제41조의2¹⁾에 따라 ①전통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②전통재료의 수급 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③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④국가유산수리 ⑤제38조제2항2)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⑥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을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칭 또한 전통건축수리에 국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현실과 법률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을 ‘국가유산수리기술’로, ‘전통건축’을 ‘국가유산’으로 수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과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83)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 개선(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3)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법률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특별시장</u>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특별시</u>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 ----- ----- <u>특별시·통합특별시</u> ----- -----

현행	개정안
“시·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 술위원회(이하 “시·도유산수리기 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2026.7.1. 시행되어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3. 시·도지정유산 중 자연유산자료 추가(안 제4조의3 및 제33조의2)

개정안은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 설계승인 대상 등 시·도지정유산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유산자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이하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 ----- ----- <u>특별시·통합특별</u> <u>시</u> -----

현행	개정안
“시·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 술위원회(이하 “시·도유산수리기 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 ·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시·도자연유산</u> 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략) ② (생략)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u>조제4호</u>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 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 ⑥ (생략)	----- ----- -----. 1. ----- ----- ----- ----- ----- <u>시·도자연</u> <u>유산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u> <u>자연유산자료</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 ----- ----- ----- ----- 「<u>자연유산</u> <u>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2 <u>조제4호 및 제4호의2</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자료”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추가되었음.

「자연유산법」 제2조제4호의2³⁾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유산자료”는 같은 법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 자연 보존상 필요한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자연유산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상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법」에 “자연유산자료”를 반영하여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3) 「자연유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자연유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승인의 의제 및 신고의무 제외(안 제33조의4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상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u>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u>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삭 제>

현행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4⁵⁾는 같은 법 제33조의2⁶⁾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또는 제37조의4⁷⁾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
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제1호⁸⁾ 또는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1호⁹⁾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5)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
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
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고시한 것

7) 「국가유산수리법」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들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
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
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자연유산법」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
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하고 있는 한편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¹⁰⁾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¹¹⁾에 따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문화유산법」 제35조¹²⁾ 및 「자연유산법」 제17조¹³⁾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10) 「문화유산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1) 「자연유산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2)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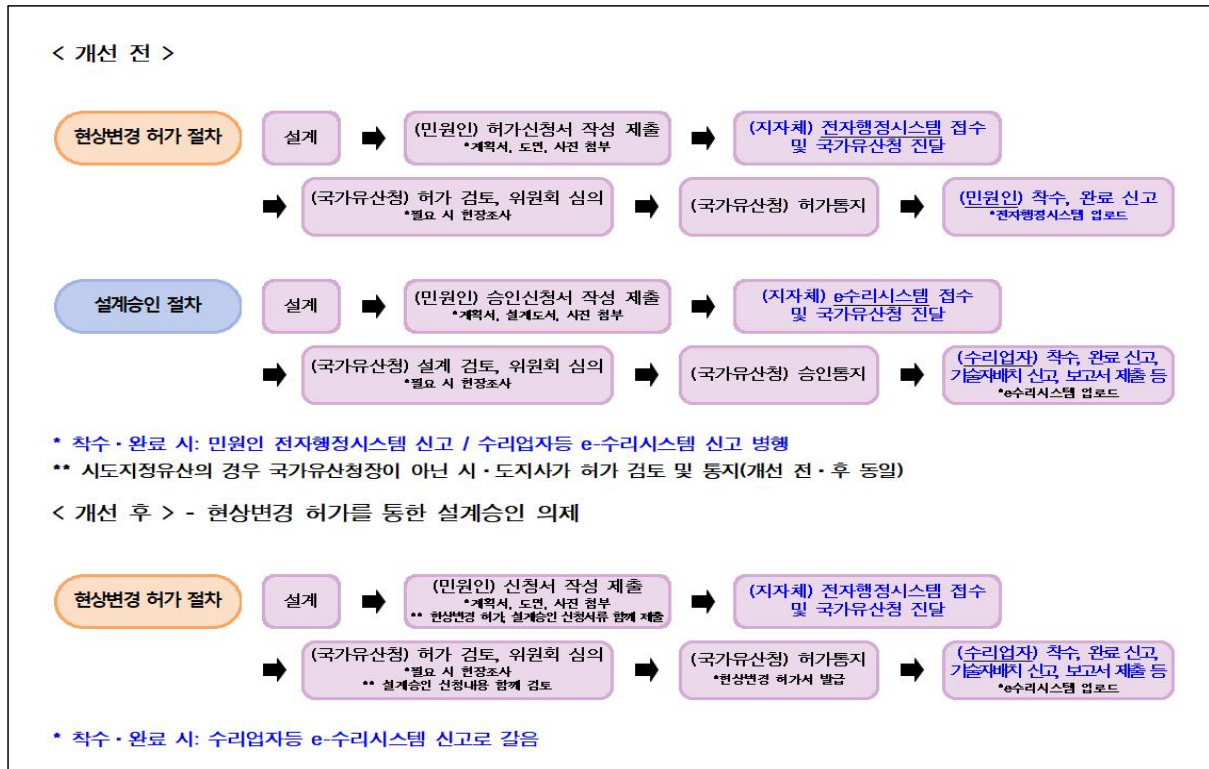
13) 「자연유산법」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그런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신청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법」의 현행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에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또는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통해 관련 승인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또는 보존처리의 착수·완료 보고를 한 경우 「문화유산법」 또는 「자연유산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현행 의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와 함께 개정되는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에서는 각각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에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허가·승인 간 의제 방향의 전환에 맞추어 신고·보고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중복 제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의안번호 221996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9968)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수리법(2219967)		문화유산법(2219966)		자연유산법(2219968)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38조(승인의 의제) 제38조(승인의 의제)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같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9조의2(승인의 의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제24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국가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제24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

국가유산수리법(2219967)		문화유산법(2219966)		자연유산법(2219968)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①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7. 제3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단서 신설>	7. ————— ———.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6. 제17조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단서 신설>	6 —————
			———.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7. ~ 10. (생략)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유산수리법(2219967)		문화유산법(2219966)		자연유산법(2219968)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③ (생략)	<u>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략) ② ~ ⑤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5. 수수료 부과(안 제51조)

개정안은 수수료의 부과 대상을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략) <u>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u> 5. ~ 8. (생략)	제51조(수수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u> 5.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법」 제13조의2제1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경력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신청에 따라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함)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시 현행 국가유산수리법 제51조제1항4의2호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대면 신청으로 경력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온라인 상시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경력증 발급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신고 등을 수행할 때 경력인정 서류 취합 및 검토 등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력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제도에서 경력증을 최초 발급 60,000원, 변경발급 5,000원, 재발급 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바, 향후 경력을 인정과 관련된 수수료가 유형별로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56조)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소속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한국전통문화대학교</u> 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u>소속기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제도는 「국가유산수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중 국가유산수리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 권한은 위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궁능유적본부가 소관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상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설계승인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92)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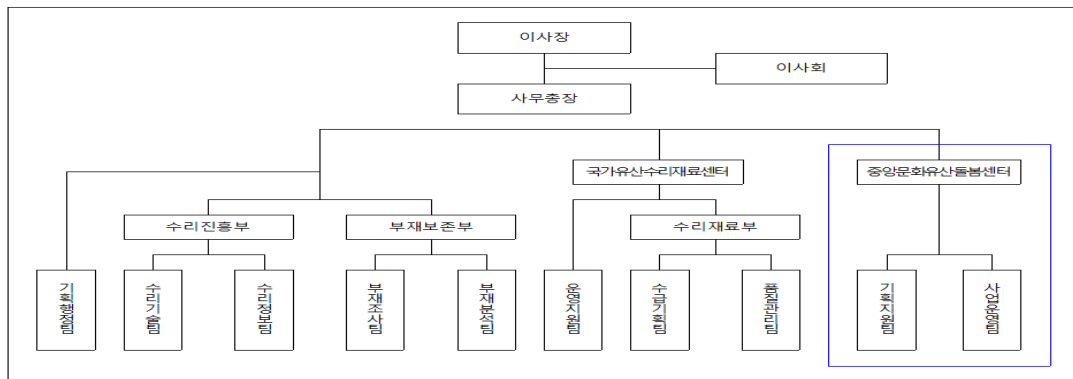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80

□ 설립 및 추진경과

-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인한 고부재 보존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기
- (2011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부지 30,000m² 확보(기재부 비축토지)
- (2016.02.03.)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근거(수리법 개정)
- (2017.02.06.)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법정법인)
- (2017.11.17.)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이관(경북궁 부재보관소→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 (2017.12.19.)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준공식
 - * 총사업비(251.1억원) / 기본설계용역(2012년), 실시설계용역(2013년), 건축공사(2013~2017년), 준공 및 개관(2017년)
- (2022.05.27.) 아재당 준공
- (2023.08.0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개관
- (2024.10.31.)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준공식
 - * 총사업비(357.91억원) /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2018년), 설계 공모(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2021년), 건축공사(2021~2024년), 준공 및 개관(2024년)

□ 조직 및 인력

- 3부 8팀(정원 34명: 파주 19명, 봉화 15명), 부설조직(8명)
- 이사회(총 14명 - 상근 1명, 비상근(감사포함) 13명) * 임기 3년, 문화유산국장 당연직 이사
 - 김창준 이사장(비상임/ 2023.6.20.~2026.6.19.(3년, 연임) / 국가유산청장 임명)
 - 이성희 사무총장(상임/ 2025.1.1.~2027.12.31.(3년) / 국가유산청장 임명)
 - * 김광열 재료센터장(이사회 포함x, 2024.5.1.~2028.4.30.(4년, 초대 센터장에 한해 1년 연장) / 이사장 제청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 부설기구 현황 : 중앙문화유산물보존센터

참고 2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2026년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6년	797.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전자행정기능 고도화 (기능확대, 업무기능 개선 등)

○ 사업기간 : 2026. 5. 21. ~ 12. 17.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연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기능 개선 등

○ 진행사항

- (2026. 6. 29.) 착수보고회 개최

- 2026년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 추진방향 일정 등 공유
- 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협조사항 안내



회의 사진



착수보고회 자료

○ 향후계획

- (~ 2026. 9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2026. 11월 말)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법률 개정 일정에 맞춰 오픈)